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:** 2026년 10월 6일
2. **발 의 자:** 김효석 의원
3. **찬 성 자:** 김영태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 김정미, 김종화, 김지식, 김춘남, 김현경, 소진혁, 신용하, 양진오, 유승헌, 이정호, 이탕모, 장미경, 전희정 의원(17인)
4. **회부일자:** 2026년 10월 7일
5. **상정일자:**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**제안 설명자: 김 효 석 의원**
2. **제안이유**

○ 상위법령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안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(범죄예방 내용 추가로 제명에 ‘보호’ 삽입)

나. 지원사업 내 범죄예방 내용 추가(안 제4조)

다. 소상공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소상공인종합센터)(안 제11조)

라. 시행규칙 삭제(법제처 권고 사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센터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제8호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종합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음.
- 다만, 지원 대상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어 여타 취약 소상공인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생 략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안심알림벨 작동 시, 지인·가족 연락 체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연계되어 출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 필요함.

Ⅶ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